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호국·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(안 제4조)
 - 당초 : 월 7만원 → 변경 : 월 8만원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,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타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